

의안번호	2214901
의 퇴 인	윤한홍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3.
추 계 번호	25E675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47조 (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)	○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- 내용: 복수의결권주식에 납입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 - 대상: (현행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상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(창업자) (개정안) 현행 + 「상법」 * 상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 *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2214899호)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7조 (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대상을 현행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상 창업자에서 「상법」 상 복수의결권주식 보유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, 과세특례 대상이 확대될 경우 소득세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함
- 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, 국가핵심기술, 방위산업기술,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유 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2148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함

- 향후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및 전환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곤란함
 -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규모, 납입되는 보통주식의 양도차익 규모, 발행주식의 전환기간 등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지만, 「상법」 개정에 따른 기업의 복수의결권 발행 수요와 보통주식 전환 시점 등을 합리적으로 전망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재함
 - 「상법」 상 '복수의결권주식을 받을 자의 자격요건' 및 '대상 기업의 범위'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현재로서는 관련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감면대상 등을 특정할 수 없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